

# 2022년도 세입 · 세출예산(안)

 사상구건강가정 · 다문화가족지원센터 

# 차

1. 예산총칙	-----	1
2. 세입·세출예산 총괄	-----	3
3. 세입예산	-----	4
4. 세출예산	-----	6

# 1. 예산 총칙

1조(예산의 규모) 2022 세입·세출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.

예산총액

(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전년도 예산액(3차추경)	증감액	증감률
총 계	2,818,716	2,751,542	67,174	2.44%

○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전년도 예산액(3차추경)	증감액	증감률
총 계	2,818,716	2,751,542	67,174	2.44%
사 업 수 입	462,138	421,546	40,592	9.63%
보조금 수입	2,339,758	2,281,997	57,761	2.53%
후원금 수입	1,800	4,660	△2,860	-61.37%
전 입 금	7,000	12,000	△5,000	-41.67%
이 월 금	8,010	31,329	△23,319	-74.43%
잡 수 입	10	10	0	0

(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전년도 예산액 (3차추경)	증감액	증감률
총 계	2,818,716	2,751,542	67,174	2.44%
사 무 비	371,812	347,341	24,471	7.05%
재 산 조성비	0	6,940	△6,940	-100%
사 업 비	2,443,447	2,367,377	76,071	3.21%
잡 지 출	0	0	0	0
예비비및기타	3,457	29,884	△26,428	-88.43%

제2조(예산의 내역) 2022년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붙임과 같다.

제3조(추가경정예산) 추경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다.

제4조(예산의 전용) ① 예산의 관간 전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.

② 예산의 항간 전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되, 100만원 이하의 예산 변경 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.

③ 예산의 목간 전용은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.

제5조(예비비)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지출 초과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예산의 1% 내외를 예비비로 계상한다.

②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추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예산의 편성·집행·회계관리) 예산의 편성·집행·회계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 지침을 준용한다.